

定 款

2021. 8. 25.

豐 生 學 園

풍 생 학 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풍생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풍생중학교
2. 풍생고등학교

제 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에 둔다. [개정 2011. 10. 06]

제 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삭제) (개정 2006.07.01)

제 13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4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5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6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17조 (삭제) (개정 2006.07.01)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 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 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20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 20조의4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 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 22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26조의2 (상근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는 이사장과 수익사업 담당이사 및 상근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28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 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

가 이사회 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조의 2 (사학윤리 강령 준수 등)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 31조의3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
2. 제조업 및 설계용역업
3. 도소매업 및 무역업
4. 주식투자 및 금융업, 컨설팅 및 서비스업
5. 음식숙박업
6. 조립 및 농장사업

제 33조 (삭제) (개정 2008. 02. 15)

제 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2조 각 사업의 사무(업)소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6]

제 35조 (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관할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제 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⑥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는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08. 25.)

1. 교사로의 임용 당시 해당 학교에 소지자격과목의 교과 교사 결원이 있어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평생학원에서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 39조의 2 (기간제 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39조의 3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조항 삭제][개정 2011. 10. 06]]

② 교원(임기가 있는 교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 39조의4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 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 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9조의5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두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3. 7. 3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 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 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3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 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6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46조의 3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7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9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교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 중 7인의교원(학교장 제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조직한다. [개정 2012. 7. 27]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0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7 .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2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8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8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인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8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0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1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1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3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64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직군에 임용될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5조 (임용) ① 일반직원 신규임용, 대우직원 선발,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재청이 있어야 한다.

제 65조의 2 [[삭제][개정 '11. 10. 06]]

제 65조의 3(윤리규범) 법인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개정 '11. 10. 06]]

제 66조 [[삭제] [개정 '11. 10. 06]]

제 67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67조의 2(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 68조(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삭제] [신설 '11. 10. 06]]

제 69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91. 9. 30]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9. 30]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70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 71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직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 72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 학 교

제 73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 ② 교장은 직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 74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1]

제 4 절 정 원

제 75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11. 10. 06] [시행일 '12. 05. 24]][개정 2012. 7. 27]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76조 (목적) 이 8장은 초. 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7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78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꺾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80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81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 82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8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4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5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86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87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8조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89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0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1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91조의2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풍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가. 풍생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나. 풍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1조의3 (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 92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 93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94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95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은 영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평생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9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 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 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9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98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9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0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학부모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01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2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 103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04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105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107조 (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 10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09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홍 사 풍	28. 2. 7	66.11.19~70.11.18	서울 성북구 돈암동 538-90
이 사	정 희 원	28. 2. 10	66.11.19~70.11.18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133
이 사	홍 사 천	20. 2. 17	66.11.19~70.11.18	서울 마포구 아파트 8동 508
이 사	장 승 길	24. 1. 5	66.11.19~70.11.18	경기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
이 사	정 생 이	29. 4. 10	66.11.19~68.11.18	부산 서구서 대신동 2가 35
이 사	송 순 자	36. 5. 16	66.11.19~68.11.18	서울 종로구 충신동
이 사	신 일 철	31. 9. 14	66.11.19~68.11.18	서울 성북구 안암동 104-225
감 사	홍 갑 선	26. 1. 26	66.11.19~68.11.18	서울 마포구 신수동 158
감 사	이 동 희	30. 3. 14	66.11.19~67.11.18	서울 마포구 염리동 138-2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조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1991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임기) 제 7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 3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2]는 2012. 0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3명
행정직계	2명
4, 5급 (서기관)	1명
6, 7급 (주무관)	1명
기술직계	1명
운 전 (8, 9등급)	1명

【별표 2】

고등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6명
행정직계	3명
5급 (사무관)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이하 (주무관)	1명
관리운영직계	1명
사무운영 (9급)	1명
기술직계	2명
시설관리 (9급)	2명

중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4명
행정직계	2명
6급 (주무관)	1명
7급이하 (주무관)	1명
관리운영직계	1명
사무운영 (9급)	1명
기술직계	1명
시설관리 (9급)	1명